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86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시행('23. 8. 30.)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설명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법령 공백을 방지하고 규칙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가액 범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따른다'고 개정

-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일부분 개정 및 별표1 삭제

나.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산하기관’ 용어 정비

-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22조의2 제4호 ‘산하기  
관’의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 각 목을 신설

###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23년 10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감사담당관,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감사담당관,  
전화 : 02-3396-4415, FAX : 02-3396-9015, e-mail : min0117@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4호 중 “구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구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구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을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23조제2항 제2호 중 “별표1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으로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생략)</p> <p>1. ~ 3. (생략)</p> <p>4. <u>구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u>에 구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p> <p>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u>구의 소속 기관 또는</u></p>	<p>제22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u> ----- ----- -----</p> <p>가. <u>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u></p> <p>나.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u>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u></p> <p>다. 「<u>공직자윤리법</u>」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u>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u></p> <p>5. ----- -----, <u>제4호 각 목의 기관 또</u></p>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① (생략)

② 이 규칙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생략)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1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 8. (생략)

③ ~ ⑤ (생략)

는 단체의 -----

-----

-----

제2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